

개호보험료의 경감에 관하여

-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의 비과세 대상자이면서 생활이 곤경에 처한 분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감액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므로, 거주지의 구청의 개호보험 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대상자

-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의 비과세 대상자로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분 (생활보호 수급자는 제외)

①세대의 연간수입이 다음의 금액 이하이다.

②부양을 받고 있지 않다.

③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

- 예저금, 국채 등은 1인 세대에서 350만엔(세대 인원이 1인 증가할 때마다 100만엔 가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세대 단위에서 본인의 거주용 이외에 처분이 가능한 토지 또는 가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④개호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다.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150만엔	198만엔	246만엔

(이후, 세대 인원이 1인 증가할 때마다 48만엔이 가산된 금액)

※연간수입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또한, 개호보험료와 개호 서비스 이용료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감 내용

제4등급 보험료 (연간 금액 60,822엔) 의 2분의 1로 경감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 아래의 이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진재해, 풍수해,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해 주택, 가재도구 등에 현저한 손해를 입은 분(면제)

●사망, 중대한 심신장애 또는 장기간 입원, 사업 또는 업무의 휴폐지, 사업에서의 현저한 손실,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소한 분(경감)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기 시작하나요?

보험료는 65세 생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합니다.

예

2015년 6월 2일~7월 1일 사이에 65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분에게는 6월분부터의 보험료를 7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의 9개월간을 균등하게 나누어, 각 달에 발생하는 100엔 미만의 끝수를 7월분의 보험료에 추가한 납부서를 7월 중순에 보내드립니다.

지불해주신 개호보험료는 소득세와 시부민세의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이 됩니다.